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중 소 기 업 창 업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종전에는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, 부도·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실패 기업인의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음.

이에, 재창업 전 고의부도, 부당해고, 분식회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한 “성실경영실패자”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년, 부도·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하여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게 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창업 인정 범위의 확대(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)

- 1) (현황) 현행 법령상 고의폐업과 창업을 반복하여 정부창업지원을 연달아 수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, 부도·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음
- 2) (개정내용) 성실경영실패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

우, 폐업일로부터 3년, 부도·파산으로 폐업 후 2년 내 동종업종 재
창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

- 3) (기대효과) 성실경영실패자의 창업을 인정하여 정부 창업지원 수혜
가 가능하게 하며,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환경을 개선하고 실패
가 제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전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제3호 중 “다만,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(부도 또는 파산
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
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”를 “다만, 사업을 폐업한 날부
터 3년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상 지난
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나 법 제43조제4항
의 성실경영실패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
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”로 한
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창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 1.~2. (생략) 3.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. <u>다만,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4.~6. (생략)	제2조(창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 1.~2. (현행과 같음) 3.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가.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)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. 법 제43조제4항의 성실경영실패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적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4.~6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	
연락처	(044) 204 - 7622